

##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

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1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014. 9. 26.  
중소기업청장

- 아 래 -

회사명 (이사장)	등록번호	인가취소일	소재지	취소사유
재창업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(김근영)	제2013-3호	2014.9.26	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태양빌딩 604호	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항 제4호

끝.